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210	담당자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국장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09.07.01.				
공개여부	공개	협 조 지리정보담당관			
방침번호					

차의 시저
0 서울을 움직이는 힘 0

Hi Seoul
SOUL OF ASIA

항공사진 발급 민원서비스 개선

2009. 6.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항공사진 발급 민원서비스 개선

항공사진의 발급서식 규정이 없어 항공사진만 복제(인화)하여 제공함에 따라 발급한 항공사진에 인증 표시가 없어 시에서 발급한 항공사진임에도 신빙성과 신뢰도가 저하되었으나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전국 최초로 항공사진에 인증문안과 전자관인을 날인 발급함으로서 시정의 신뢰도 향상과 비교우위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항공사진 발급 현황

연 도 별	구 분				비 고
	계	밀 착	양 화	확 대	
계	2,071	358	49	1,664	
2007	750	143	29	578	
2008	897	163	20	714	
2009	424	52		372	2009. 5 현재

● 문제점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1조,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항공사진은 별표 및 별지서식에 수수료와 신청서식에 대한 규정만 있고 발급서식 규정이 없어 항공사진만 복제(인화)하여 제공함으로서 발급한 항공사진에 인증 표시가 없어 시에서 발급한 항공사진임에도 신빙성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재산권 관련 소송의 증거 자료로 인용 시 위·변조 우려가 있음.

[위·변조의 실익]

기존무허가건물(1982년 제1차 항공사진 촬영일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자격 취득 및 공익사업에서 보상(주택특별공급)대상이 되어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음.

■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 제공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만 하고 일반인에게 항공사진을 발급하던 절차를 개선하여 항공사진교부 목록을(민원인이 신청한 항공사진 파일 첨부) 기안(팀장전결)후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관인날인**을 받아 첨부한 항공 사진파일을 복제(인화)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인증 문안]

발급번호 제 호 확인자 : (서명)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0000년 00월 00일 촬영한 항공사진을 위와 같이 확인 발급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서울특별시장(인)

[개선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1. 항공사진 교부 결재 시 항공사진 파일 첨부 여부	내부결재 - 미 첨부	일반기안 - 첨부	
2. 항공사진 관인 날인 여부	인화지 특성상 (광택) 날인불가	전자관인 날인	
3. 개선 효과	항공사진에 관인이 없어 발급여부 수시 문의	항공사진에 관인 날인 으로 시정의 신뢰도 향상	전국 최초 인증 시행 - 시정우위 확보

■ 기대효과

민원인이 신청한 발급대상 항공사진을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관인날인**된 항공사진 파일로 복제(인화)하여 교부함으로서
우리시에서 발급한 항공사진임을 **인증**하여 항공사진의 위·변조 예방과 항공사진 서비스 제공의 신뢰 증진을 도모함 - **전국 최초시행**
(항공사진 촬영일자, 교부일자, 전자관인 날인(인화))

■ 행정사항

- **개선안 시행 및 자치구 통보 : 즉시**

첨 부 : 항공사진 발급 개선 전후 사진 각 1매